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의약품 불법 리베이트, 범정부적 대처

-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규정 도입에 앞서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함.
 - 지난 4월 요양기관과 제약사 간의 불법 리베이트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쌍벌제가 마련됨.
 - 하지만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매출 신장을 꾀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의 필요성이 제기됨.
 - 이에 정부는 제약사, 요양기관 등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계부처가 공조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.

- 복지부, 수사기관, 공정위, 국세청 등의 관련 정부부처는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는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방침임.
 -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‘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’를 개설하여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약청, 시·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·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함.
 - 법무부·검찰청·경찰청 등의 수사기관은 복지부, 공정위 등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시 관련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실시함.
 - 공정위는 관계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제약업계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,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,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.
 - 국세청은 자체 자료 또는 복지부, 검찰 등의 자료 이첩을 통해 세무조사에 활용하고, 법인세, 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함.

(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범정부적 대처, 보건복지부, 7/13)